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77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2년 6월 18일

발의자 : 임병섭의원의외7인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회의규칙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 함으로써,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상임위원회가 구성 됨에 따라 종래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시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케 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한다.

나. 예산 및 결산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규칙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(등록)중 “간사에게”를 “사무국에”로 한다.

제 3 조(의석배정)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3 조(의석배정)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

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.

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

제 15 조(의사일정)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의사일정)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 18 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중 “제출”을 “제출·제안”으로 하고, “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”를 “한때”로 한다.

제 19 조(의안의 회부)의 제목 “의안의 회부”를 “상임위원회 회부”로 하고,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,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②의장은 안전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

제19조의 2 내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 2(특별위원회 회부)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 다만,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19조의 3(심사기간)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전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, 위원회가 이유없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9조의 4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21조 제2항중 “의제가” 앞에 “본회의의”를 삽입 한다.

제23조(변안)중 “발의한다”를 “발의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”로 한다.

제2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안전심의) ①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전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·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전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,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 할 수 있다.

제2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 2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전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45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중 “선출된”를 “매회기 선출 된”으로, “간사가”를 “사무국장이”로 한다.

제50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 2(위원회의 제안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이때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.

제5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 2(연석회의)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

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

③연석회의는 안전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제5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 2(준용규정)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0조 (예산안심의)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항중 “예결위원회”를 “소관상임위원회”로, “본회의”를 “예결위원회”로 한다.

제60조 (예산안심의)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결위원회”라 한다.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
제64조 (결산안의 심사)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4조 (결산안의 심사) ①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

③의장이 결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0조 제3항을 준용한다.

제72조 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제1항 중 “할 수 있다.”를 “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73조 (경호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3조 (경호)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1장의 제목중 “제11장”을 “제9장”로 한다.

보칙의 제목 “보칙”을 “제10장 보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등록)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<u>의회간사에게</u>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등록) 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<u>사무국에</u>.....                      .....</p>
<p>제3조(의석배정)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정한다. 다만,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간사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3조(의석배정) ①.....<u>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</u>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</p> <p>②<u>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u></p>
<p>제15조 (의사일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②<u>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5조 (의사일정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</u></p> <p>③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</p>	<p>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..... ..... <u>제출·제안</u>..... .....<u>한다.</u></p>
<p>제19조(의안의 회부)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·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.</p> <p>②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전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..... ..... .....<u>보고하</u>며,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</p> <p>②의장은 안전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</p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③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	<p>(삭 제)</p>
<p>④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</p>	<p>(삭 제)</p>
<p>⑤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전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	<p>(삭 제)</p>
<p>(신 설)</p>	<p>제19조의 2(특별위원회 회부) <u>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 다만,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전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u></p>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	<p>제19조의 3(심사기간)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전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, 위원회가 이유없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</p> <p>제19조의 4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
<p>제21조(수정동의) ①(생략)</p> <p>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.</p> <p>③——④ (생략)</p>	<p>제21조(수정동의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본회의의 의제가.....</p> <p>③——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번안) 번안동의를 본회의에서의 의안을 발의한 회원이 그 의안을 발의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</p>	<p>제23조(번안)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<u>발의한다</u>.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전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.</p>	<p>.....<u>발의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24조(안전심의) ①본회의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<u>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,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</u>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,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<u>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</u>.</p> <p>②——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	<p>제24조(안전심의) ①.....</p> <p>.....<u>그 안전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</u>.....<u>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전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의결로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②——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의 2(재회부) <u>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전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</u>.</p>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5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회의록에는 의장·의장을 대리한 부의장·임시의장과 의회에서 <u>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</u> 서명·날인한다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·날인한다.</p>	<p>제45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.....  .....  .....<u>매회기 선출 된</u>.....<u>사무국장이</u>  .....  .....</p>
<p>(신 설)</p>	<p>제50조의 2(위원회의 제안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<u>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때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.</u></p>
<p>(신 설)</p>	<p>제55조의 2(연석회의)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 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. 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</p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 설)	제59조의 2(준용규정)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60조(예산안심의)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 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<u>이의 심</u> <u>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(이하</u> <u>“예결위원회”라 한다.)에 회부하고 예결위</u> <u>원회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</u> <u>보고한다.</u> 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<u>본회</u> <u>의에 부의한다.</u>  ③의장은 예산안을 <u>예결위원회에 회부할</u> <u>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예결</u> <u>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</u> <u>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</u> <u>수 있다.</u>	제60조(예산안심의) ①..... ..... ..... <u>이를 소관</u> <u>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</u> <u>예비심사를 하여.....</u> ..... ②..... <u>이를</u> <u>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“예결위원회”라</u> <u>한다.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</u> <u>회의에 부의한다.</u> ③..... <u>소관상임위원회.....</u> ..... <u>소관상</u> <u>임위원회.....</u> ..... <u>예결위원회.....</u> ....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4조(결산안의 심사) ①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.</p> <p>(신 설)</p> <p>(신 설)</p>	<p>제64조(결산안의 심사) ①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</p> <p>③의장이 결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0조 제3항을 준용한다.</p>
<p>제72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징계자격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다.</p> <p>②—— (생략)</p>	<p>제72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..... ..... .....</p> <p>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.</p> <p>②—— (현행과 같음)</p>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73조(경호)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<u>일정한 기간을 정하여</u>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<u>경찰관의 파견을</u>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<u>의회의 경호가 급히</u>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<u>경찰관의 파견을 즉시</u>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제11장 <u>정</u> <u>계</u></p> <p><u>보</u> <u>칙</u></p>	<p>제73조(경호)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<u>의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</u> 얻어 <u>일정한 기간을 정하여</u> 관할 경찰관서에 <u>경찰관의 파견을</u>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<u>긴급을 요할 때에는</u>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제9장 <u>정</u> <u>계</u></p> <p>제10장 <u>보</u> <u>칙</u></p>